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의사록

2019년 2월 22일(금) 개최된 2019년 대의원총회(7차 총회) 결과보고입니다.

- 일시 : 2019. 2. 22(금) 19:00~21:15
- 장소 : 공유공간 나눔 공동교육장(중곡동)
- 참석자 : 총 대의원 66명 중 48명 참석

1. 의례 및 주요 연혁보고

○ 국민의례

- 김은미이사가 국민의례로 다 같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 법인 설립취지문 낭독

- 박정숙 이사가 법인 설립취지문 낭독하다

○ 민동세 이사장 인사말 하다

- 2018년에는 직원조합원 워크숍, 도우누리 온라인 이벤트, 조합원 한마당, 사업장별 기념행사와 고독사 예방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 생애주기별 협동조합 사업장이 자리 잡았다. 서울아가마지, 늘푸른돌봄센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능동 꿈맞이어린이집, 중량노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 조합원 모두의 성과이다.
- 2019년을 상상하며 먼저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도우누리의 존재가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직영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오늘 안전에서 결의하여, 함께 내딛는 첫 걸음이 될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호주머니 속에서만 꿈꿔오던 '협동조합 요양원'을 가시화 할 것 같다.

- 도우누리 활동가들이 두터워 졌다고 하다. 송인옥 사무국장, 최석환 사업팀장이 2018년을 내닫다가 지금은 박홍수 총괄팀장, 한선혜 주거복지과장, 김혜인 재무과장, 최은경 조직과장, 강연정 사업과장이 함께하게 되었다.
- 도우누리가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장으로 더 넓어지게 되었다. 늘푸른돌봄센터(강서 양천점), 늘푸른돌봄센터(노원점)이 곧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가까운 날에 또 하나의 가족으로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부끄럽지 않게 성장하는 2019년을 생각하고 도우누리가 지나온 길은 누구도 가지 않은 첫걸음, 당분간도 도우누리의 길이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작지만 뚜렷한 등불이 되는 길일 것 같다고 하다

○ 주요 활동 연혁 보고

- 송인옥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 2008.7.1 늘푸른돌봄센터 자치 운영시작하다
- 2010.1.21 사회적기업 인증 받다
- 2017.8.27 자활우수기업 선정되다
- 2017.6.28.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하다
- 2018.6.15~16. 법인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직원조합원 연수 진행하다
- 2018.7.02.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소액대출사업 개시(5000만원 운용)하다
- 2018.10.21. 법인설립 10주년 기념행사 도우누리 한마당 진행하다
- 2019.1.29.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상 수상하다

2. 총회

○ 성원보고

- 박진환 이사가 정족수 66명 중 47명 참석으로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이사장이 힘찬 박수로 대의원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서기 및 사찰 선출

- 이사장이 서기로 김연수 대의원, 사찰로 강신용 대의원 추천하다
- 참석한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서기로 김연수 대의원, 사찰로 강신용 대의원을 선출하다

○ 전차 의사록 보고

- 송인옥 사무국장이 전차 의사록을 보고하다

○ 회순채택 및 안건 상정

- 이사회에서 제출한 회순대로 채택을 묻다
- 대부분의 이사가 동의 재청하여 이사회 제출한 회순대로 채택하다

○ 안건 상정

□ 제1호: 2018년 활동평가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장이 제1호 안건 2018년 활동평가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1호 안건에 대한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 이사장이 1호 안건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부연설명과 보고를 하다
- 이사장이 특별회계를 보고하다
- 이사장이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표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 있었고 전원이 ‘가’ 로 표결하여 1호 안건에

대해 승인하다

□ 제2호: 2018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장이환, 정영원 감사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사업과 회계 감사 보고서를 송인옥 사무국장이 대신 보고하다
- 이사장이 질문과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표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 있었고 전원이 '가' 로 표결하여 2호 안전에 대해 승인하다

□ 제3호: 임원(이사) 선출 건

- 이사장이 제3호 안전 인원(이사) 선출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3호 안전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 이사장이 안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선거과정은 선관위에서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다
- 정지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원과 현장 개표요원 도움요원으로 사무국장 과 조직과장을 소개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일 현재 15명의 이사(직원이사 11명, 직원 외 이사 4명), 2명의 감사가 재임 중이며, 2019년 2월 현재, 임기 만료되는 이사(이사장포함, 사임이사 1명 포함) 11명과 사업 감사 1명에 해당하는 임원선출이 필요하다고 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방식과 당선기준(선출인원수(4명) 초과외 수로 후보 등록 된 늘푸른돌봄센터의 경우는 투표용지에 4인이하로 기표, 당선은 다득표순으로 4명 / 이외의 단위의 투표는 찬반란에 기표, 당선은 과반수 이상자)에 대해서 설명하다.
- 이병화선거관리위원과 송윤주선거관리위원이 기표소와 투표소를 관리하고, 사무국장, 조직과장, 사업과장이 대의원 각자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다.

- 대의원 각자가 투표를 하다.
- 투표가 완료되었고, 개표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작업을 주문하다.
-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자수 48명과 투표용지가 찬반투표(중량요양원 소속 이사, 서울아가마지 소속이사, 직원외조합원 이사, 사업감사)48매가 맞는지 확인하는지 주문하였고, 동일함을 확인후 대의원에게 동일하다고 발표하다.
-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찬반투표의 개표를 요청하다.
- 개표결과를 보드판에 게시하여 발표하다.

임원종류	소속	이름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이사	중량요양원	강신용	42	4	1	1
	중량요양원	조남식	42	4	1	1
	서울아가마지	이성례	42	3	2	1
	직원외조합원	권은자	45	1	1	1
	직원외조합원	김은미	44	1	2	1
	직원외조합원	윤여운	43	1	3	1
사업감사	직원외조합원	장이환	45	1	1	1

-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로 중량요양원 소속 강신용, 조남식, 서울아가마지 소속 이성례, 직원외조합원 소속 권은자, 김은미, 윤여운, 사업감사로 장이환이 당선됨을 발표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늘푸른돌봄센터 소속의 이사 투표의 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문하다.
- 개표결과를 보드판에 게시하여 발표하다.

임원종류	소속	이름	득표수
이사	늘푸른돌봄센터	문호영	37
	늘푸른돌봄센터	민동세	44
	늘푸른돌봄센터	박인호	4
	늘푸른돌봄센터	박정애	42
	늘푸른돌봄센터	박진환	23
	늘푸른돌봄센터	이창기	14
	늘푸른돌봄센터	이현주	19

-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으로 문호영, 민동세, 박정애, 박진환이 당선됨을 발표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이사는 민동세이사 단 1명이다. 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대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된 이사장에게 인사말씀을 요청하다
- 당선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정지현 이사님께 박수로 답례하다
- 임원선거에 낙선하신 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다
- 이사장이 대의원총회를 속개하다

□ 제4호: 정관개정 승인의 건

- 이사장이 제4호 안건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4호 안건에 대한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 이사장이 안건 4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요청하다
- 김미진 대의원이 개정 요청한 제3조(조합의 책무) ②항에 의하면, 직원을 고용 할 때에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로 되어있는데 신규직원이 왔을 때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조합을 먼저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를 묻다
- 이사장이 안내 할 때 조합을 가입한 후에 채용의사를 하는 절차라고 답하다
- 김미진 대의원이 개정 요청한 제55조(소액대출) ②항에 의하면, 매월 납부를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한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요청하다
- 이사장이 소액대출이 필요한데 아직 월증자를 못하는 분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월 증자를 결의하는 것으로 대출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기로 소액대출 위원회에서 유연하게 열어 놓았다고 답하다
- 이사장이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표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 있었고 전원이 ‘가’ 로 표결하여 제4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p> <p>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p> <p>② 조합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③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2019.2.22, 정기대의원총회 4차 개정, ②항 신설, 개정 전 ②항을 ③항으로 개정)</p>
<p>부칙 제5조 (없음)</p>	<p>신설 부칙</p> <p>제5조(경과 규정)정관 제3조 ②항에 의한 조합원 우선채용은 정관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p> <p>(2019.2.22, 정기대의원총회 4차 개정, 제5조 신설)</p>

개정 전	개정 후
<p>제55조(소액대출)</p> <p>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000,000 원으로 한다).</p>	<p>제55조(소액대출)</p> <p>②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을 증자하기 위해 매월 납부를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본인 총 출자금의 4배 이내에서 선택 하되, 최대 400만원 까지 가능하다</p> <p>(2019.2.22, 정기대의원총회 4차 개정, ②항과 ③항을 수정하여 개정)</p>

1) 협동조합 업무지침: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54조(사업의 종류)</p> <p>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p> <p>(2018.2.23, 정기대의원총회 3차 개정, 7호 수정, 11~13호 신설)</p>	<p>제54조(사업의 종류)</p> <p>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p> <p>14. 주거기본법에 의한 임대주택공급,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택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관리서비스</p> <p>15.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p> <p>16.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에 필요한 기관 및 시설 운영</p> <p>(2019.2.22, 정기대의원총회 4차 개정, 14~16호 신설)</p>

□ 제5호: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장이 제5호 안건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손익계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제5호 안건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특히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직영사업장의 예산승인은 이사회로 위임해줄 것을 제안하다.
- 이사장이 제5호 안건 주문과 제안사항을 추가로 설명하다. 직영사업장의 예산손익계산서(안)이 제출되지 못한 이유가 직영사업장의 회계마감이 1월14일로서, 결산이 늦어지면서 자동으로 예산수립도 늦어졌음을 설명하다.
- 이사장이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표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 있었고 과반 수 이상 ‘가’ 로 표결하여 제5호 안건에 대해 직영사업장의 예산손익계산서(안)의 승인을 이사회로 위임하는 것 포함하여, 주문된 대로 승인되다

□ 제6호: 전직원조합원화 조합원우선채용 결의안 채택의 건

- 이사장이 제6호 안건 전직원조합원화 조합원우선채용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6호 안건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 이병화대의원이 해당 안건이 각 사업장에서 강제사항인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이사장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답하다.
- 이사장이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표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 있었고 과반 수 이상 '가' 로 표결하여 6호 안건에 대해 승인하다

- 조합원 우선채용 결의안 -
(전직원조합원화 실천 기초 대책안)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조합원이다.

우리는 돌봄사회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출자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를 설립하였다.

우리는 6명의 노동자로 출발,
설립 10년된 오늘 현재 643명의 동료들이 함께 하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인답게 우리조합을 공동운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오늘 '백년기업 도우누리, 만명 조합원의 일자리창출 도우누리'를 상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조합 사업장의 신규직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으로 채용하여 도우누리의 크고 담대한 꿈을 함께 실현하기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함께!
'좋은돌봄 실천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대의원 일동

□ 제7호: 자본조달에 대한 결정 이사회위임에 건

- 이사회장이 제7호 안건 자본조달에 대한 결정 이사회위임에 건을 상정하다
- 송인옥 사무국장이 7호 안건 주문과 제안사항을 설명하다
- 이사회장이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의원에게 가부 의결을 요청하다
-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7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19년 총회 의결 이후부터 다음 총회개최까지 발생하는 자본조달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승인하다.

□ 기타안건

- 이사회장이 더 이상 질문과 토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모두 처리됨을 보고하다.

6. 의사록 채택

- 이사회장이 의사록 채택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의원이 동의 재청하다

7. 폐회

- 이사회장이 폐회에 대해 대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은 2019년 2월 22일 21시 15분으로 기록함)

2019년 2월 22일

기록: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의원 김연수

이사회 승인 후 5명의 참석 대의원 기명날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민 동 세	(인)
박 정 애	(인)
윤 여 운	(인)
이 성 례	(인)
정 지 현	(인)

